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93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전용기·허 영·주철현

허종식 · 강준현 · 서미화

민병덕 • 이수진 • 김용만

민형배 · 오세희 · 박희승

송옥주 • 안태준 • 정준호

이성윤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.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,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(수도권은 100분의 8).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. 따라서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(안 제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100분의 3"을 "100분의 5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	제10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
건설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	건설) ①
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	
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	
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	
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	
된 지방공사(이하 "지방공사"라	
한다)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	
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	
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	
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<u>100분</u>	<u>100분</u>
<u>의 3</u>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	<u>의 5</u>
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	
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	
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